## 1. 개정이유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, 조사신청 및 사건처리 절차와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사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사신청의 반려, 불개시 근거 명확화(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2항)

나. 사건의 분리·병합 및 중지사건의 조사신청 철회 절차 마련(안 제8조의2 및 제18조제2항)

다. 의견 제출·조사 요청 및 재조사 절차 정비(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)

라. 전용실시권·전용사용권의 보호범위 명확화(안 제3조의2)

마. 부처 명칭 및 조사 관련 서식·용어 정비(안 제3조, 제7조 및 별지 제1호·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별지서식 개정내용

무역위원회고시 제 호

#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전용실시권 등의 보호)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정된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물품등이 포함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
2.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

제7조 중 항 번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사건의 분리·병합) ①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의 피신청인 또는 피조사인이 포함되어 있고, 각 피신청인 또는 피조사인에 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를 구분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는 것이 조사절차의 효율적인 진행,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, 영업상 비밀자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분리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둘 이상의 사건이 당사자, 조사대상물품, 위반행위, 주요사실관계 등이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함께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병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⑤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은 분리 또는 병합 전 각 사건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분리된 사건의 경우 분리 전 사건의 조사개시결정일부터, 병합된 사건의 경우 병합 전 각 사건의 조사개시결정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.

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”를 “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재조사 명령)”을 “(재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”를 “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4.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등”을 “4. 관련 지식재산권 등”으로 하고,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 동의서 중 “본인은 조사신청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, 아래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”를 “본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·판정·처분 및 그 후속절차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통지를 하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, 아래의 전자우편주소를 통하여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조사원”을 “조사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)<br>① (생 략)<br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 제3조(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)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산업통상부장관의<br>---------- |
| <신 설> | 제3조의2(전용실시권 등의 보호)<br>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정된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물품등이 포함된다. |
| 제6조(조사신청서의 검토 등)<br>① ~ ③ (생 략)<br><신 설> | 제6조(조사신청서의 검토 등)<br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<br>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|
| | 2.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|
| 제7조(직권조사) ① 법 제6조에서 “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| 제7조(직권조사) 법 제6조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제8조(조사개시의 결정 등) | 제8조(조사개시의 결정 등)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 |
| ② (생 략) |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8조의2(사건의 분리·병합) |
| | ①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에 둘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이상의 피신청인 또는 피조사인이 포함되어 있고, 각 피신청인 또는 피조사인에 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를 구분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는 것이 조사절차의 효율적인 진행,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, 영업상 비밀자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분리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.<br>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둘 이상의 사건이 당사자, 조사대상물품, 위반행위, 주요사실관계 등이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함께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③ 위원회는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병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<br>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br>⑤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은 분리 또는 병합 전 각 사건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분리된 사건의 경우 분리 전 사건의 조사개시결정일부터, 병합된 사건의 경우 병합 전 각 사건의 조사개시결정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. |
| 제15조(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) | 제15조(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)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① ~ ③ (생 략)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. | ④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18조(조사신청의 철회) | 제18조(조사신청의 철회)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 이 때 위원회는 조사 종결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 ② -----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----------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제20조(재조사 명령) 위원회는 다 | 제20조(재조사) ----------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.<br>1. ~ 4. (생 략) | ----------<br>----------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.<br>1. ~ 4. (현행과 같음) |

# [참고] 별지서식 개정내용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---|
| 별지 제1호서식<br>(조사신청서) | 4.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등 | 4. 관련 지식재산권 등 |
| 별지 제1호서식<br>(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 동의서) | 본인은 조사신청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, 아래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 | 본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·판정·처분 및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통지를 하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, 아래의 전자우편주소를 통하여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 |
| 별지 제3호서식<br>(영치조서) | 조사원 | 조사관 |